가정상담

5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7호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표지-5월 2018.5.9 3:33 PM 페이지3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 곽배희 소장이 지난 4월 17일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의 주최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32면)

본소 교육부의 비혼모 캠프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가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 (관련내용 26면)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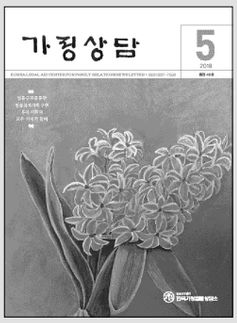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년도 상담 통계 ❷ 다문화 가정

14 • 특별기고 |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❷

23 • 가정폭력상담실

26 • 교육부

29 • 인터넷 상담

30 • 결혼과 인생(183) 만화일기
봄 비 _ 장차현실

31 • 좋은 책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32 • 상담소 소식

34 • 지부 소식

36 • 상담통계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8. 5.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4 CMYK출력

이 달의 메시지*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에 부쳐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당시 여성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진 YWCA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시민 단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창립 100주년 즉 1세기를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YWCA에서 다양한 영역의 여성지도자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한국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제가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희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효재, 박영숙, 장명수, 박동은, 윤정옥 선생님 등 역대 수상자 분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수상자가 되었다니 더더욱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 YWCA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계몽운동을 중심에 놓고 당시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 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의 반대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애국정신을 기반으로 물산장려운동에 앞장섰고, 1950, 60년대에는 민주적이며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지도력을 배출해 내는 중요한 기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소외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청계천 노동자들을 위한 평화교실을 개설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생활 조건 향상, 더 나아가 근로여성들의 직업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은행원 결혼 각서 폐지운동, 여성조기 정년제 폐지운동, 가족개정법 운동에 힘쓰면서 여성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것은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자립을 위한 캠페인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운동을 벌였으며 냉전의 종식과 새로이 개편되는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프

* 이 달의 메시지는 본소 곽배희 소장의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 소감 중 일부이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5 CMYK출력

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YWCA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사회 변화의 흐름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1956년 창설되어 우리 사회 소외계층, 번민하는 이웃들을 위한 법률복지 사업과 법의 생활화, 가족법상 부부평등과 양성평등 그리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가족법개정운동 및 가족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앞장서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번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상담소 창설자이자 저의 스승이신 이태영 선생님께서 생전에, 특히 상담소 초창기에 저희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YWCA는 일을 너무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세련되게 일들을 해내는지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상담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상담소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해 보는 기회로 삼았었는데 이태영 선생님께서 이런 상담소의 모습들을 보셨다면 이제 YWCA와는 비교 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YWCA의 위상에 대해 새삼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생각하는 오늘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여성' '여성계' 등을 생각해봅니다.

학교 졸업 이후 상담소에서 제가 선배, 어른들을 모시고 그분들 에게 보고 배우며 일해 온 시간들이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제가 그 선배들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워온 대로 행하였으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제 후배들의 모습은 제가 후배였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있음을 봅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어찌 보면 저는 여러 면에서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 조금은 모호하게 끼여 있는 세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 상황 속에서 여성주의의 이슈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전처럼 여성계라는 우산 아래 선후배가 함께 자리하여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동시에 저는 저와 상담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몸 담아 일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저는 사회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고통 받고 번민하는 소외계층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가족법개정운동은 물론이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도 해 왔으며 대사회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는 가족문제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분명한 목적사업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순위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권, 성 평등, 가족구성원의 복리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소 역시 상담소의 목적사업과 더불어 언제나 적극적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의 철폐나 호주제 폐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구성원 간 완전한 양성평등을 구현하여 가정 내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은 곧 상담소의 목적사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대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있고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담소를 지킬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가정, 사회에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YWCA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6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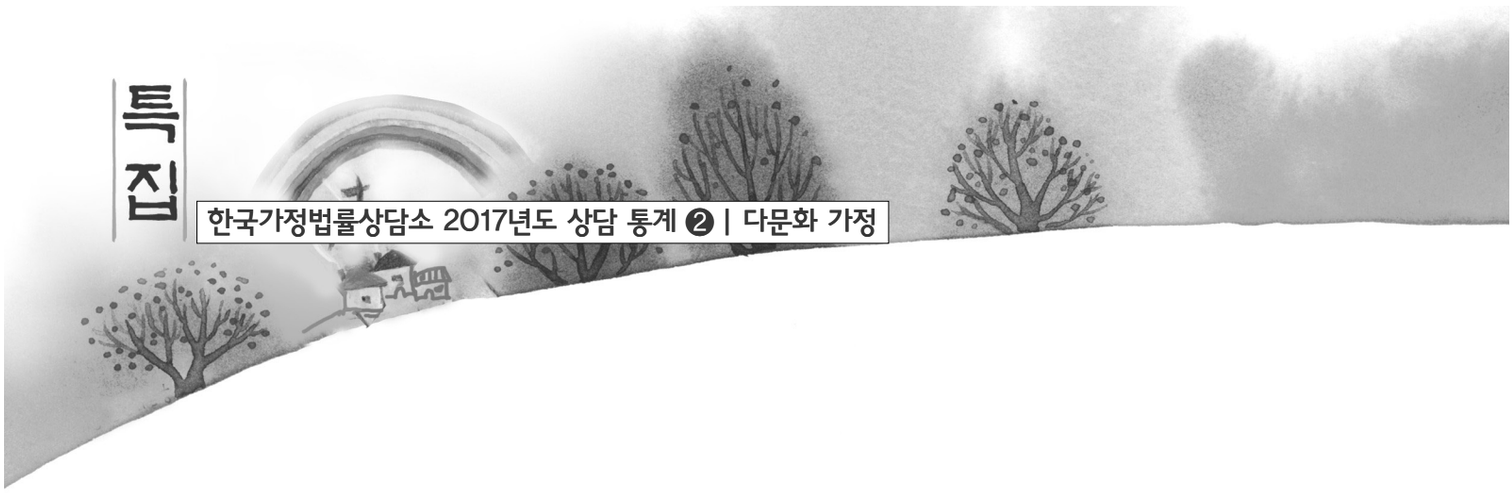

특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년도 상담 통계 ❷ | 다문화 가정

한국인 남편 – 아내 찾아 삼만리, 오자마자 집 나가 사라졌다?
외국인 아내 – 결혼해서 한국에 와 보니 내가 네 번째 아내?

외국인 아내의 잠적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인 남성)

방글라데시 여성과 2004년 혼인신고하였다. 상대방은 혼인신고하고 며칠 후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오지 않았다. 상대방이 불법체류자였다는 것을 혼인신고 직후에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그 일로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백방으로 상대방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몇 년 후 포기하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 그 상태로 13년이 지났다. 여전히 상대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인 남편이 재혼 사실과 나이 등을 속인 사례

(내담자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결혼해서 와 보니 남편은 나와 네 번째로 혼인한 것이었다. 나이도 속였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남편은 의처증도 심해서 내가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싫어했다. 집 안에만 가둬두려고 했다. 계속 살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했기에 몰래 한국말을 배우러 다녔는데 남편에게 들켰고, 심하게 폭행당했다. 그런 후 남편은 집을 나가 내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그 사이 남편은 또 다른 외국 여자를 만나 외도하면서 보란 듯이 그 여자와 나눈 문자를 내게 보내오고 있다. 나도 이혼 원한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의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계속 증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1.9배 더 많아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인 경우 25.2%

재혼가정 비율 36.2%

한국인 남편의 67.1%, 외국인 아내의 90.8%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혼인신고 후 49.4% 별거 중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을 이유로 이혼상담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자신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상담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7 CMYK출력

2017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총 건수는 1,133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788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45건이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70.0%였고,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0.0%였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실제 이혼한 다문화가정(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중 87.2%가 본 상담소 방문해 이혼상담 받아

3월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전국 이혼 건수는 5,206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총 904건이었다. 본 상담소 서울 본부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건수는 788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87.2%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비율 높고, 경제적 빈곤 심각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등 갈등유발 요인 많아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연령면에서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이 17~30년 연상, 일반가정 4.4% / 다문화가정 25.2%).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7.3%였으나 다문화가정은 36.2%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2.1배 가량 높았다.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일반가정은 남편이 64.8%, 아내가 69.5%였으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67.1%, 외국인 아내는 90.8%로 더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I.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34.8%, 한국인 남편 65.2%
2014년부터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계속 증가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788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74건(34.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14건(65.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 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더 많이 상담소를 찾았고(한국인 남편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4년부터는 상담소를 찾는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한국인 남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788명 중 중국이 4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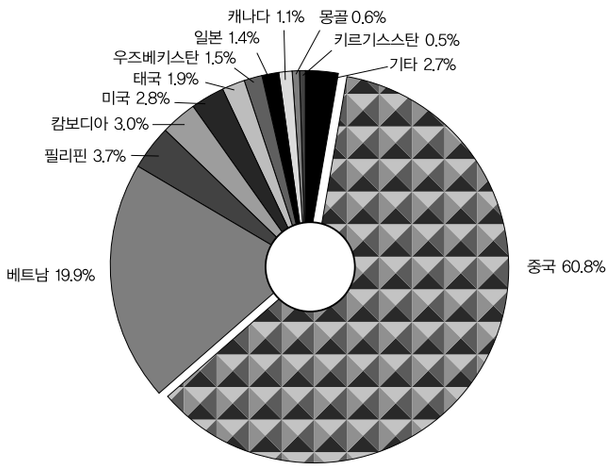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8 CMYK출력

(6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7명(19.9%), 필리핀 29명(3.7%), 캄보디아 24명(3.0%), 미국 22명(2.8%), 태국 15명(1.9%), 우즈베키스탄 12명(1.5%), 일본 11명(1.4%), 캐나다 9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5.2%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255명(32.4%), 40대 187명(23.7%), 50대 160명(20.3%), 20대 99명(12.6%), 60대 이상 77명(9.8%)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314명(39.9%), 40대 192명(24.4%), 60대 이상 171명(21.7%), 30대 94명(11.9%), 20대 15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100명(12.7%),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646명(82.0%),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30명(3.8%), 미상인 경우는 12명(1.5%)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163명(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차이 96명(14.9%), 15~16년 차이 80명(12.4%), 7~8년 차이 61명(9.4%), 3~40년 차이 60명(9.3%), 13~14년 차이 56명(8.7%), 9~10년 차이 47명(7.37%), 1~2년 차이 44명(6.8%), 11~12년 차이 36명(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3명(0.5%)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인 남성)

나이가 들어 베트남 여성인 아내와 결혼하였다. 나와 아내는 25살 차이가 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아내와의 갈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아내는 기분이 좋으면 문제가 없으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를 괴롭혔다. 내가 힘들어 집을 나가려고 하면 놔주지를 않았다. 결국 싸움이 커지게 되고 최근에는 나도 참지 못해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로 못할 짓이니 헤어지자고 했으나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차리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도 아내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힌다. 너무 답답하다.

경제적 능력 없어 빈곤 심각해

외국인 아내는 주부(228명, 28.9%), 한국인 남편은 단순노무(163명, 20.7%)가 가장 많았다. 특히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5.4%, 한국인 남편은 62.0%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0.8%(715명)와 한국인 남편의 67.1%(529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담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인 남성)

8년 전 태국 여성과 재혼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아내는 내게 계속 태국에 있는 친정에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나 역시 전혼자녀가 있지만 생활이 빠듯해서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폭언을 해대며 나를 몰아세운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나와 살려고 온 것인지 태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 온 것인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담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결혼해서 한 번도 남편이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해 나갔다. 남편은 계속 술만 마셨고 아예 가정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 살기가 너무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9 CMYK출력

어려워 5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에 가서 한 달 있었다. 그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이는 베트남에 두고 나만 한국에 와서 남편과 별거하면서 돈을 벌어 베트남에 보냈다. 작년에 한국에서 베트남 남자를 만나 현재 동거 중이다. 남편에게 돈이 없어 받을 돈도 없지만 이제는 돈도 필요 없다.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갖고 싶다.

●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재산보유액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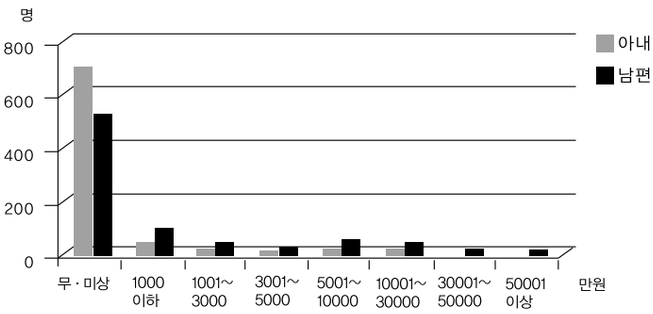

●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월수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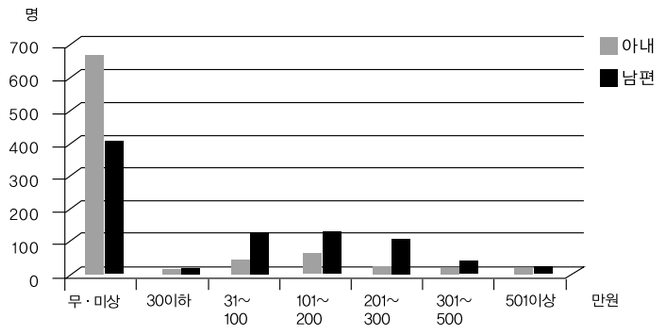

재혼가정 비율 36.2%에 달해
전혼자녀 있는 경우 어려움이 더 커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40.6%(320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8.5%(67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6.9%(54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0.8%(164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34.0%(268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1%(9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8%(30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27.7%(218명)[남성 초혼-여성 재혼(6.9%, 54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0.8%, 164명)]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3.8%(30명)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입국이나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 한국인 남편의 조력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로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에게 억압과 무시, 모욕 등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입양한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와 이혼 시 이혼절차뿐만 아니라 파양절차도 밟아야 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많다.

● **전혼자녀 국적 취득 문제로 이혼을 망설이는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에서 왔고, 결혼한 지 3년되었다. 남편은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한국에 오면서 전부소생의 딸아이(12살)를 같이 데리고 왔고, 아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 힘들어도 참고 지냈다. 작년에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남편이 나를 심하게 폭행해 내가 119에 실려 갔었다. 현재 남편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어도 나와 딸 모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혼하면서 외국인 아내의 전혼자녀를 파양하고자 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인 남성)

나는 오래 전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 9년 전 중국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0 CMYK출력

한족인 아내를 만나 혼인하였다. 나와 아내 모두 재혼이었고, 아내의 전혼자녀인 딸까지 내가 입양해 같이 생활하였다. 그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왔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게도 전혼 자녀가 두 명 있다. 그 아이들 형편이 좋지 않은데 아내는 사전에 내가 내 아이들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다며 수시로 나를 몰아세웠다. 내게 장애연금이 나오는데 아내는 그 연금 말만 나오면 매우 예민하게 굴었다. 현재는 아내가 내 밥도 차려주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 이혼할 경우 입양한 아내의 딸을 파양하고 싶은데 방법은?

전체의 49.4%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2.5%(20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6.0%(47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5.2%(41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9.3%(73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23.0%(181명), 10년 이상은 41.0%(323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49.4%(389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30.1%(11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19.8%(77명), 10년 이상 17.0%(66명), 3년 이상~5년 미만 15.7%(61명), 1년 이상~2년 미만 9.5%(37명), 2년 이상~3년 미만 8.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67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30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44.8%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618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59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58.1%에 달하였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면, 간이귀화신청 요건을 미리 알고 입국한 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을 이유로 이혼상담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자신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274명)

1위 '남편의 폭력' (3호)(31.4%, 86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무능력 · 성격차이 · 의처증 · 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26.6%, 73명)

3위 '남편의 가출' (2호)(7.7%, 21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514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불성실한 생활, 배우자의 이혼강요, 불신 · 결혼조건속임 등이 우선 순위임)' (6호)(32.1%, 165명)

2위 '아내의 가출' (2호)(20.0%, 103명)

3위 '자신이 아내 폭행' (내담자 3호)(18.1%, 93명)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1 CMYK출력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31.4%(8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6.6%(73명), 2호 '남편의 가출' 7.7%(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7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870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45.1%, 1,746명), 3호(남편의 폭력 31.0%, 1,201명), 1호(남편의 외도 13.0%, 503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사유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3호 사유인 남편의 폭력을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이혼상담을 하러 온 한국인 남편들 중 18.1%도 자신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해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한국인 남편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나이가 어린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내가 따르지 않으면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외도, 이혼강요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다. 과거에도 폭력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뜸했는데 요즘 들어 다시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나는 요리학원에도 다니면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나를 홀대하였다. 나도 지쳐 이혼 원하는데 남편에게 방 한 칸 얻을 돈은 받고 이혼하고 싶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폭언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하고 싶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남편은 멍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폭행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해댄다. 나는 한국말을 대부분 알아듣기는 하나 말은 잘 하지 못한다. 그래도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싶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외도, 가출 사례

(내담자 4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한국 남편과 혼인 후 돈을 벌어 전처 소생 자녀의 교육비까지 대가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언, 폭행 등으로 나는 사는 내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그래도 참고 지냈는데 3년 전 남편은 20대 필리핀 여성을 만나 임신시켰고, 내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제는 나도 지쳐서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아내들이 두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3명 중 '장기별거'가 21.9%(1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갈등' 20.5%(15명), '배우자의 이혼강요' 11.0%(8명), '생활무능력' · '성격차이' · '의처증' · 폭언' 각 5.5%(각 4명), '알콜중독' · '무시/모욕' 각 2.7%(각 2명), '거짓말' · '마마보이' · '잦은 가출' · '애정상실' · '대화단절' 각 1.4%(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2.1%(16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20.0%(103명),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 18.1%(9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2 CMYK출력

한편, 본 상담소의 2017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345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 애정상실, 정신병 순 57.3%, 771명), 2호(아내의 가출 18.9%, 254명), 1호(아내의 외도 12.3%, 165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3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68명(내담자 6호, 3명 포함) 중 '장기별거'가 64.3%(10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0.1%(17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5.4%(9명), '불성실한 생활' 3.0%(5명), '배우자의 이혼강요' 2.4%(4명), '불신' · '결혼조건속임' 각 1.2%(각 2명), '경제갈등' · '전과/복역' · '잦은 가출' · '잦은 외박' · '대화단절' 각 0.6%(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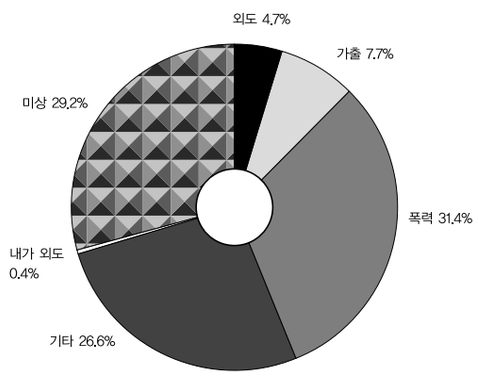

아내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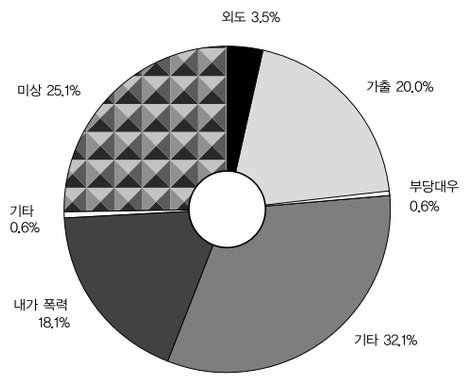

남편이 상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아내의 가출, 자신이 폭행한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필리핀 여성을 만나 7년 전 혼인하였다. 아내와 연애결혼했고, 잘 맞는다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많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투다가 화가 나 아내 뺨을 때린 적이 있는데 4년 후 아내가 갑자기 그 폭행 건을 문제 삼으며 필리핀에 가버렸다. 작년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필리핀에 갔으나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입국증명서를 떼어보니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내게 연락조차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 가출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친척 누나의 소개로 15살 차이 나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아내는 임신만 하면 자주 유산을 하였고 몸조리를 이유로 한국에 시집 온 친언니 집에 자주 다녀오곤 하였다. 아내는 뭐든 자신 맘대로 하려고 했고,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며 답답해했다. 9개월 전에는 아예 그 집에서 기거하며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이혼사유는 나와 시어머니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인데 나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하고 있는 처형도 괘씸하다. 대처 방법은?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이유는 나와 어머니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도 폭언과 기물파손의 잘못이 있지만 아내가 결혼 4년 이후부터 캄보디아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집을 자주 나가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체류연장을 위해 집에 잠시 들어왔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쪽지만 써 놓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3 CMYK출력

고 집을 나가는 것을 반복하였다. 아내의 SNS에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총 1,133건) 중 30.0%(345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3.1배 더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345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84건(24.3%),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261건(75.7%)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3.1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 일본, 인도 순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요르단, 세네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345명 중 중국이 181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 35명(10.1%), 일본 29명(8.4%), 인도 10명(2.9%), 방글라데시 · 영국 각 5명(각 1.5%), 캐나다 · 프랑스 · 네팔 · 독일 · 대만 각 4명(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가 많았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다만,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요르단, 세네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편의 국적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력 유입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을 입국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는 혼인의 실체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고 혼인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따른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은 자신의 폭력, 외도 등
본인 잘못을 이유로 한 상담 많아
한국인 아내는 장기별거, 외국인 남편의 가출, 폭력 호소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이 31.0%(2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내담자 1호 '자신이 외도' 27.4%(23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1.4%(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하러 온 외국인 남편들 중에는 자신이 외도하거나 아내를 폭행하는 등 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한국인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해올 경우 국적 취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한편, 외국인 남편들이 세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명 중 '장기별거'가 27.8%(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22.2%(4명), '경제갈등' · '정신병' 각 16.7%(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9.5%(10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15.7%(41명), 3호 '남편의 폭력' 14.2%(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03명 중 '장기별거'가 59.2%(6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폭언' 8.7%(9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6.8%(7명), '성격차이' 4.9%(5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상담위원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4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특별기고**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2)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개정법에 따른 증명서 제도

위에서 본 수정안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래에서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새로운 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다.

(1) 가족관계증명서

1)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한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양자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및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기재된다.[1] 따라서 전혼중의 자녀 등(혼인외의 자녀, 사망한 자녀)은 일반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정정이력사항도 제외된다.[2]

상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이외에 전혼 중의 자녀, 혼인외의 자녀, 사망한 자녀가 현출된다. 즉 상세증명서에는 이전의 전부사항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와 정정이력사항이 기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하였는데, B에게 혼인외의 자 C가 있다면 B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C는 현출되지 않는다(C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가 C를 입양한다면(일반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관계없이), C는 B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자녀로 기재된다(물론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C가 자녀로 기재되며, 양자라는 표

**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이며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개정 전반에 걸쳐 이론적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김상용 교수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년을 맞아 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1)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개정법의 한계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괄적으로 현출된다. 이러한 일반증명서는 우리사회에서 종래 일반적인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정형화된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혼인중의 자녀로 태어나, 혼인하여 자녀를 둔 경우를 하나의 전형적인, 완전한 가족으로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전형적인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어느 사항이 현출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예를 들어 기아로 발견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여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는 어떤 가족도 현출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외의 자로 태어나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아예 현출되지 않으므로, 혼인외의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서 증명하려는 사항은 보통 본인의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가족 간의 관계이다(본인과 어머니,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자녀 B 등).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친권자로서 자녀 B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와 B의 친자관계만 증명하면 되므로, 증명서에 A와 B만 현출되면 충분하다. 이런 경우 A의 부모, 배우자, B 이외의 다른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시에 현출시키는 것은 증명의 목적에 비추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개정법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현출되도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가족관계증명서는 그것이 일반증명서라고 해도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공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 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 가족의 모습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실제 기능을 생각한다면, 개정위원회 초안에서 제시된 일반증명서의 모델과 같이 증명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 간의 관계만을 현출시키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증명서 형식이라고 본다.[3]

② 개정법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고, 일반증명서에 전혼중의 자녀와 혼인외의 자녀가 현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혼한 여성 갑이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을과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상세증명서에는 자녀로서 을 이외에도 현재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병도 현출되므로, 을과 병이 성(姓)과 본(本)이 다른 경우에는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혼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된다(이런 경우 병이 현출되는 것은 증명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3) 독일신분등록법의 출생증명서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증명서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신청인이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 출생증명서에는, 1. 자녀의 성명 2. 자녀의 성(性) 3. 출생장소와 출생일 4. 부모의 성명 5. 자녀와 부모가 속한 종교단체(출생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등이 기재될 수 있는데, 위의 사항 중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 4, 5는 제외할 수 있다(독일신분등록법 제59조 제2항. Berkl, Peersonenstandsrecht, Rn. 1115). 즉 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명과 출생장소, 출생일만이 표시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원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경우 1, 3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고, 그 외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1, 3, 5만을 표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출생증명서가 발급된다(Gaaz/Bornhofen, Personenstandsgesetz, § 59 Rn. 14). 독일에서는 2007년 신분등록법 개정에 의해서 신분등록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우리보다 신분등록시스템의 전산화가 늦게 이루어진 독일에서도 이와 같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6 CMYK출력

에 개정법은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4항.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 발급이 시행된다면, 위의 경우 갑은 본인 외에 자녀 을만을 선택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로써 필요한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정법이 특정증명서의 종류(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것인가)와 기재 가능한 선택사항(예컨대 부모와 특정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 기재), 시행시기 등을 모두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4]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 발급이 시행되지 않는 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다.

③ 위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가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 간의 관계만을 현출시킨다면(개정위원회 초안), 이와 별도로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정법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 등이 일률적으로 현출되고, 상세증명서에는 추가적으로 전혼중의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는 증명방식에서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특정증명서는 부모와 혼인외의 자녀 또는 전혼중의 자녀와의 관계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혼인중의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자녀 중 1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자녀 중 1인의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신청할 목적으로 특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가 보편적으로 발급되고 사용된다면,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성이 강한 대법원에서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우려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아예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 기본증명서

1)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라 기본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기아발견, 인지(종전의 성 · 본 유

4)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4항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증명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개정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에서 특정증명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때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형식의 증명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증명서의 공시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5종의 증명서 중 어느 증명서에 대하여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어떠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언제부터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것인지 등 중요한 사항이 전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작성자: 전문위원 강남일)도 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각 증명서의 개별 증명사항을 선택하는 데 따른 시스템 구비 등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여 다른 증명서 제도(공포 후 6개월)와 달리 시행일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비 등에 5년까지 소요될지 의문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족 관 계 증 명 서(일 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75년 01월 01일	750101-2234567	여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양부(金養父)	1953년 01월 01일	530101-1234567	남	金海
모	이미옥(李美玉)	1954년 01월 01일	540101-2345678	여	全州
배우자	박길동(朴吉童)	1978년 01월 01일	780101-1345678	남	密陽
자녀	박은지(朴恩知)	2009년 01월 01일	090101-4345678	여	密陽
자녀	박돌석(朴乭石)	2012년 01월 01일	120101-3234567	남	密陽

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가 족 관 계 증 명 서(상 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75년 01월 01일	750101-2234567	여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양부(金養父)	1953년 01월 01일	530101-1234567	남	金海
모	이미옥(李美玉)	1954년 01월 01일	540101-2345678	여	全州
배우자	박길동(朴吉童)	1978년 01월 01일	780101-1345678	남	密陽
자녀	최원일(崔元一)	1998년 01월 01일	980101-1434567	남	慶州
자녀	이시중(李時中)	2006년 01월 01일	060101-3234567	남	全州
자녀	박은지(朴恩知)	2009년 01월 01일	090101-4345678	여	密陽
자녀	박돌석(朴乭石)	2012년 01월 01일	120101-3234567	남	密陽
자녀	박양자(朴養子) 사망	2014년 01월 01일	140101-4345678	여	密陽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지, 종전의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 친권·후견, 실종선고취소(부재선고취소), 국적취득(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정정이력사항이 기재된다.[5]

2) 개정법의 한계

① 가족관계증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개명' 이외에도 위에서 본 다양한 개인정보가 함께 현출된다. 이런 경우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등 개명과는 무관한 정보가 함께 현출되어 있는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증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된다는 점과 특정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종류 등이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규칙)은 우선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이에 의하면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에 기재되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2호 제2조: 신청인은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예컨대 미성년자 A의 어머니 B가 A의 친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증명서 대신 특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도 달성하고,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그 외의 개인정보의 노출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에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이

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18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기 본 증 명 서(일 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류본인(柳本人)	2006년 01월 01일	060101-3534567	남	文化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00번지의 1234 [신고일] 2006년 01월 20일 [신고인] 부

위 기본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기 본 증 명 서(상 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정정	[도로명주소기록일] 2011년 12월 10일 [경정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경정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경정사유]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류본인(柳本人)	2006년 01월 01일	060101-3534567	남	文化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00번지의 1234 [신고일] 2006년 01월 20일 [신고인] 부
~~친권~~	~~[친권자지정협의일] 2007년 01월 20일~~ ~~[친권자] 모~~ ~~[모의본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번지의 1234 호주 전친부의 자~~ ~~[신고일] 2007년 02월 20일~~ ~~[신고인] 부모~~
친권	[친권자사망일] 2007년 12월 10일 [친권자] 모 [직권기재서작성일] 2007년 12월 20일 [친권자지정기재직권말소일] 2007년 12월 20일
친권	[친권상실선고심판확정일] 2010년 01월 02일 [심판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친권상실된자] 부 류부친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류친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후견	[법정후견인의취임일] 2010년 01월 02일 [법정후견인] 류친족 [법정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 800101-2345678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류친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시(읍·면)장 ○○○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외에 다른 사항의 증명(예컨대 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② 이외에 기본증명서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아래에 예시한 견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이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되는데, 기아로 발견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현출되지 않아서 기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공시되는 결과가 된다.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출생에 관한 사항은 대개의 경우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예를 들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입사지원자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를 한 사람 등을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일반증명서에 일률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증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즉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비단 기본증명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으로서 본(본관)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이후 본관은 법률상으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신분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본관을 굳이 필수적인 기본정보로 공시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아로 발견된 사람의 경우에는 성·본의 창설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데, 이 때 창설되는 성·본은 우리 역사상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개 법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

기 본 증 명 서(특정 – 친권 · 후견)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류본인(柳本人)	2006년 01월 01일	060101-3534567	남	文化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후견	[법정후견인의 취임일] 2010년 01월 02일 [법정후견인] 류친족 [법정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 800101-2345678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류친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기본증명서(특정-인권 · 후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 · 면)장 ○ ○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는 것이다(예컨대 한양 김씨, 안양 박씨 등). 이런 경우 일반증명서에 의한 본관의 노출은 본인이 기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정보가 되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분증명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4종의 증명서에 있어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구별 없이 본(본관)은 현출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증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정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면 족할 것이다.

(3) 혼인관계증명서

1)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배우자의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 ii) '혼인' 및 '이혼', iii)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에 관한 사항 및 정정이력사항이 기재된다.

2) 개정의 의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현재 혼인상태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반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세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의 일부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특정증명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도 개정의 목적 –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 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과거의 이혼 사실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이혼 사실을 감추고 혼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라고 해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이 점에 있어서는 개정 전과 후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6] 상대방이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혼인하려는 상대방의 과거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7] 결국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혼인상태만이 기재되기 때문에 과거의 이혼 사실을 감추고 혼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7)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제7조(약혼) 제2항에서 '약혼 당사자는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교환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0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혼 인 관 계 증 명 서(일 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75년 01월 01일	750101-2234567	여	金海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돌석(朴乭石)	1978년 01월 01일	780101-1345678	남	密陽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배우자] 박돌석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780101-1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혼 인 관 계 증 명 서(상 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75년 01월 01일	750101-2234567	여	金海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돌석(朴乭石)	1978년 01월 01일	780101-1345678	남	密陽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신고일] 2000년 01월 20일 [배우자] 전남일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2007년 02월 20일 [배우자] 전남일
혼인	[신고일] 2009년 03월 20일 [배우자] 박돌석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780101-1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라 입양관계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 ii)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 iii)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 및 정정이력사항이 기재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입양취소', ii) 친양자가 파양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및 정정이력사항이 기재된다.[8]

2) 개정의 의의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주로 현재의 양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대개 일반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세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9]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의 일부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특정증명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8)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견본은 따로 게재하지 않았다. 이 증명서의 견본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1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예외적으로 상속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상세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1 CMYK출력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도 개정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한계

(1)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5종의 신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등록사항만이 현출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증명서가 실생활에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법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 이 규정은 일반증명서와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관계에서 일반증명서와 특정증명서의 발급과 제출이 원칙이며,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에 의해서 증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라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벌칙 규정은 도입되지 않아서 그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10]

(2) 한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법이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 이유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개정법의 취지는 상당히 퇴색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신분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증명서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특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때에는 다음 순서로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순서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11] 이러한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친족 · 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필요한 신분과 가족관계의 증명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한다는 신분등록제도 본래의 취지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

10) 개정위원회에서는 원래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11) 예를 들어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2 CMYK출력

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정법에 의해서 5종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증명서에 '일반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실제 생활관계에서도 일반증명서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기재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현출됨으로써 재혼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개명 이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의 인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므로,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 · 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다. 필자는 2006년에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신분등록제도를 참고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12]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마무리 한 바 있다.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서구사회에서도 개인의 신분과 가족에 관한 기록은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성전환자 등에 관한 기록사항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른 편견이 서구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우리사회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외국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때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 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호적제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신분등록제도의 역사상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증명서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되지 않는 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12) 김상용, 가족법연구 II, 2006, 법문사, 280면 이하. 이 논문은 독일 Freiburg 대학의 라이너 프랑크(Rainer Frank) 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3 CMYK출력

부모의 가정폭력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겨

사건번호 2016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2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7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7. 3. 14. ~ 2017. 9. 2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 2녀(51세, 50세, 42세, 40세)가 있다. 2016년 11월 사건당일 밤, 행위자는 피해자 혼자 김장을 준비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집기들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폭력원인을 자신의 가부장성 때문이라고 꼽았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성격이 급하고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결혼 후 3~4년 만에 행위자의 언어폭력이 시작된 이후 언어폭력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참고 살던 피해자가 5~6년 전부터 맞대응을 하자 행위자는 신체폭력도 가하였다.

상담에 대한 욕구를 확인한 결과, 행위자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남편이 짜증을 내지 않고,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였으면 좋겠다. 남편이 내 얼굴을 보지 않으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부부가 함께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부부생활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 후, 개별상담과 교육강좌에 참여하도록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상담 중기 피해자에게 중간점검을 한 결과, 행위자의 급한 성격과 의사소통방식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행위자의 태도가 개선되었고 다만 이전의 습관이 가끔 나오려는 기색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행위자의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아 폭력적인 성행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종결 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성격 자체가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조심하는 태도가 보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를 안하무인으로 대하던 태도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점을 피해자를 구박하지 말 것, 좋은 말로 대화할 것, 거친 말투 쓰지 말 것 등이라고 꼽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향후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피해자도 싸우지 말고 살자고 응답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4 CMYK출력

사건번호 2016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부부집단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5회, 음주문제상담 3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4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7. 3. 22. ~ 2017. 9. 2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 1남(16세, 15세, 9세)이 있다. 행위자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고 참는 성격이지만, 술을 마시면 쌓아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행위자는 2016년 8월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빠져서 기물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상담 초기 행위자는 자신의 술 문제를 인정하고 절주하기로 다짐하고 노력하였다. 집 밖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정도로 절주하였다. 부부는 행위자가 집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행위자의 절주로 갈등 요인이 감소되었다. 또한 행위자는 말이 없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행위자는 원가족 모임에서 누나에게 "고맙다"는 감정표현을 하였는데, 가족들에게 감정표현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자로 자녀들의 소식을 묻고 관심을 보이면서 자녀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 역시 아빠가 달라졌다며 변화를 인정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한 부부집단상담 초반에 행위자는 "자신은 문제가 없다, 부모님도 모두 좋은 분이다"고 하는 등 저항감을 보이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회기가 진행될수록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에 폭력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술 문제와 폭력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행위자는 음주문제 개선과 비폭력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간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2*** 폭행, 2016버2***폭행
사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겸 피해자(남편)	개별상담 7회, 집단상담 12회,
행위자 겸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1회, 교육강좌 6회 등

총 32회 실시

상담기간

2017. 3. 27. ~ 2017. 9. 2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15세)이 있다. 남편은 결혼 후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신체적인 다툼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폭력발생이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결혼 초부터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사건 당일, 남편은 아내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 아들의 저녁밥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투다가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남편의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등 폭력을 하여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5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부부는 사건 이후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문제를 다투어야 할 것 같아 부득이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각자의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내는 남편을 상습폭력자, 폭력성행자라고 하며 분노조절장애 등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남편은 자신이 이기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아내를 독선적이고 자기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커서 남편은 아내가 아이 교육에 집착한다고 하였고, 아내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내는 이혼 의사가 강하여 이혼 전 숙고보다는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나 심리문제의 극복 등에 대한 도움을 원하였다. 남편은 상담이 부부관계 개선 방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의 가사조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동침을 하고 아이 및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 부득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전개에 대하여 아내는 마음을 열고 남편의 변화를 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남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부부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남편 역시 이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고 아이의 의사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부부의 마음이 각별하여 양육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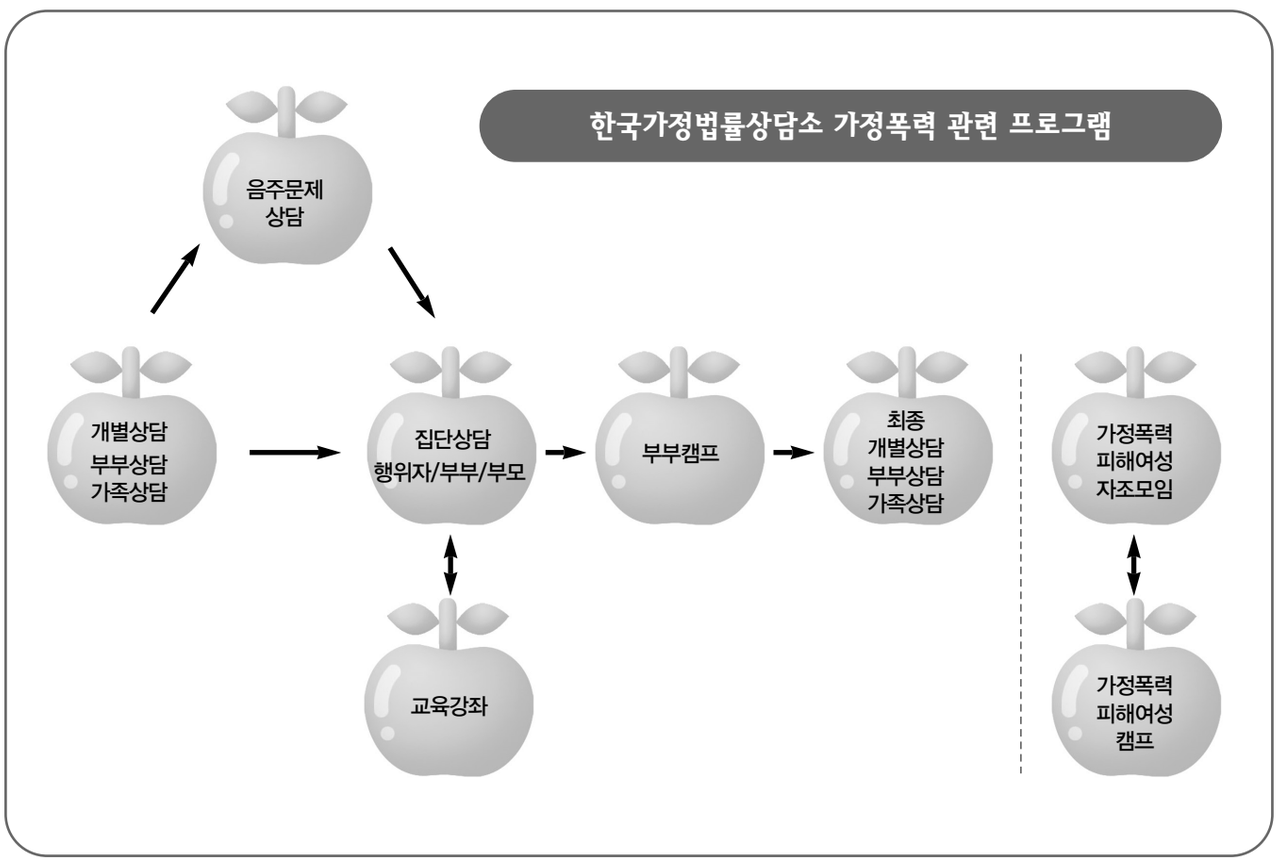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6 CMYK출력

비혼모 가정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봄나들이

- 일 시 : 2018년 3월 30일(금) ~ 3월 31일(토) (1박 2일)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56명, 자녀 38명,
  조은경, 박상진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은정 차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노재광 대표(아하교육컨설팅, 웃음치료전문가)
  애란가족 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31명

□ 프로그램 개관

새봄을 맞아 본소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비혼모 56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법률 및 주거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어머니들이 강의와 상담을 받는 동안 아동들은 탁아 및 놀이치료 등의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에버랜드 내에 있는 숙소 홈브리지 캐빈호스텔 에 묵으며,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A.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강의 및 상담」

▷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의 출생신고,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문제들을 다양한 상담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그리고 양육비, 파산 및 면책, 가정폭력, 상속포기, 성년후견, 성변경 등 다양한 상담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송구조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에서 법률구조신청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박은정 차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주거복지 마이홈센터)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7 CMYK출력

B.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3.「놀이치료 프로그램」

▷ 강사 : 노재광 대표(아하교육컨설팅, 웃음치료전문가)

어머니들이 강의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아동들은 노래 부르며 팀 만들기 게임, 볼링공 쓰러트리기, 숫자 탑 쌓기 활동 등을 개인별 및 팀별로 하면서 규칙을 익히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풍선으로 꽃, 동물 등을 만들고 서로 선물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에 대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4.「용인 에버랜드 체험」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용인 에버랜드로 이동하여 캐빈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 날까지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정리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었던 상담 및 설문조사, 후기 등을 통해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 · 경제적 · 제도적 · 심리적 · 사회적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비혼모들은 열악한 주거 문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 가는 어려움, 정신적 · 심리적 고립감, 생활비 등의 경제적 빈곤, 턱없이 부족한 자립지원금 및 양육비와 양육물품 지원의 부족함,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부가 언제 찾아와 아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과 육아를 양립해 나가는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과거에 비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 가정, 양육을 병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캠프만으로 비혼모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비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며 육아와 일에 치인 이들에게 꿈같은 1박2일 가족여행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던 모습과 귀가버스에 탑승할 때 아쉬워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많은 비혼모 가정이 다음 번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8 CMYK출력

참가 소감문

임○○, 21세

안녕하세요. 저는 애란원에 1월 5일에 입소하여 이제 막 4개월에 접어든 임부입니다. 작년 5월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1366 여성 센터의 도움으로 비공개시설에 잠시 입소해 있다가 퇴소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여 임신사실을 알고 현재 애란원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 후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아기 아빠와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고 가족관계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캠프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성년후견 문제 그리고 특별대리인 선임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궁금했던 성년 후견 문제,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 그리고 본인 동의 없이 통장 개설, 수급비 부정착취에 대해 속 시원히 물어보고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의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가 되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계획을 세워 앞으로의 일을 조금 더 알차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도 보고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사파리 관광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친해지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많이 놓여있고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나에 대해 생각이 많았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의 강의와 캠프에서의 개별 상담 그리고 현실 속 고민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웃으며 아기와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주신 말씀과 추억은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의 준비를 하고 또한 남은 임신 기간 출산 후 아이와의 삶을 보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22세

오늘은 소중한 내 딸의 99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캠프를 너무 기대했다. 법률상담 할 때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일찍도 와서 상품권도 받았다. 평소에 궁금했던 양육비, 친권, 친자 확인 등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 아이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 요구할까봐 불안해하던 나에게 힘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주거복지, 임대주택도 제대로 알게 되어 다행이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적금하는 게 아니라 매달 몇 만원씩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부모, 청소년 등은 임대주택 신청에 있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앞으로 우리 딸과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할 대책이 조금은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쁜 퍼레이드 시간에 딸이 잠들어서 아쉬웠지만 조금 깨있던 시간에 멋진 장면을 보며 웃는 딸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아이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김○○, 18세

2017년 3월, 날씨가 제법 따뜻했던 어느 봄 날, 저는 애란네트워크 나래취업사관학교 간호조무사 과정을 알게 되어 애란 영스빌에 입소했습니다. 아직은 영스빌 엄마들과 어색했던 그 때, 저의 첫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캠프 날이 다가왔고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 그 날의 가법캠프에서 소감문을 쓰던 저는 정말 많은 혼란 속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쓰는 소감문이 정말 반갑네요. 저는 1년 전의 이곳에서 했던 다짐과 믿음 하나로 제 아들을 무사히 출산 할 수 있었고,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짧은 18년의 삶 중에서 가장 바쁜 1년 이었고, 가장 많이 울었던 1년 이었고, 또 가장 많이 웃고 행복했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 1년 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비혼의 엄마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1년 전 제가 받았던 그 감사했던 손길들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는 가정법률교육이 그저 에버랜드에만 오는 그런 여행이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년간의 간호조무사과정을 무사히 완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력을 소진한 저에게 큰 휴식이며 아이와 작지만 큰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도 듭니다. 이렇게 재충전 할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29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인·터·넷·상·담

Q

저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을 하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혼 후 몇 달 정도의 양육비만 지급한 후 6개월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전남편의 친구여서인지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후에도 전남편은 물론 회사로부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만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전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하면,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0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1

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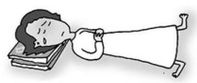

글 | 그림 | 장차현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1 CMYK출력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2017

아이들이 한참 해리 포터에 빠져 있었던 어린 시절, 방 안의 형광등 스위치를 켜면서 '루모스'라는 주문을 외웠다. 해리 포터의 온갖 주문들을 날리는 아이들을 보며 서양 문화에 있어서 '라틴어'라는 부분들을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가끔 곱씹어 생각하는 '이 순간을 즐겨라 Carpe Diem' 혹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게 되는 '이 사람을 보라 Ecce Homo' 그리고 왜 인지 외우고 있는 남의 대학의 표어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죽은 언어라고 하지만 주위 도처에 라틴어와 그 흔적들이 있고 아직도 독특한 울림을 준다.

이 책 『라틴어 수업』은 한국인 최초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 변호사이자 가톨릭 사제인 한동일 교수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초급·중급 라틴어'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서강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신촌 대학가를 벗어난 지역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 찾아와 늘 강의실이 만원이었다고 하는 저자의 강의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다.

저자의 강의는 어학 수업이라기보다 라틴어의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제도, 법, 종교 등을 포함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까지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가 유학 시절 경험했던 일들, 만난 사람들, 공부하면서 겪었던 좌절과 어려움, 살면서 피할 수 없었던 관계의 문제,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성찰 등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주제가 함께 녹아 있어 라틴어 강의를 넘어선 종합 인문 교양 수업이라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10강의 라틴어 '도 우트 데스(Do ut Des)'는 '네가 주면 나도 준다'라는 뜻으로 로마법의 채권 계약에서 나온 법률적 개념이지만 저자는 이 말을 통해 과거 로마법상 계약의 기준이 되는 네 가지 도식에서부터 유럽의 세속주의와 상호주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나아가 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이 개념이 왜 과거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중요한지 설명한다.

모든 내용이 다 인상적이었고 학문과 삶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생각꺼리들을 던져 주었지만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Lectio 9 만일 신이 없더라도 Etsi Deus non daretur' 'Lectio 12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Post coitum omne animal triste est' 'Lectio 13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est, ego valeo' 'Lectio 25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Vulnerant omnes, ultima necat' 등이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은 뭔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Lectio 26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Dilige et fac quod vis' 'Lectio 28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Dum vita est, spes est'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숙 현 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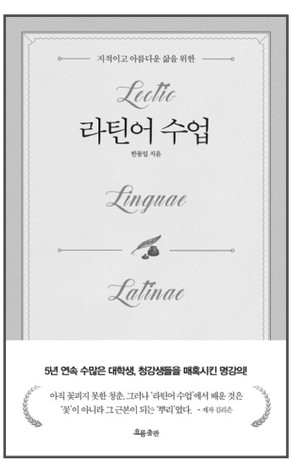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2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상.담.소 . 소.식

곽배희 소장,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

4월 17일, 시상식 열려

본소 곽배희 소장이 지난 4월 17일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희) 주최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곽배희 소장은 지난 45년 동안 가정문제 전문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왔으며, 가족법 개정운동에도 앞장 서 1997년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판결과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이끌었다. 또한 1998년의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곽배희 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있고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담소를 지킬 것"이라며,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사회에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은 YWCA지도자로 여성인권 확립을 위해 헌신한 박에스더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됐다. (관련사진 2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본소에서는 여의도 벚꽃축제를 맞이하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4월 6일(금)부터 4월 10일(화)까지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 을 실시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 자녀의 성결정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법률구조와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 등을 안내 하였다. 특히 시민들은 부성주의원칙 조항에 대한 법개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가족법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20명과 자원봉사자 3명, 그리고 시민 1773명이 참여하였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3 CMYK출력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4월 26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외도의 유형과 대처, 부부관계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강의는 오는 6월 28일(목)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4.12.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4.25. 온누리호스피스 대상 법교육 – 조경애 상담위원

4.25.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2일 대법원이 주최한 가족관계등록법 심포지엄에, 25일에는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온누리교회 주최 호스피스 교육에서 상속과 유언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2일 형사정책연구원의 여성 · 아동 ·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간담회에 참석하였다. 12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으며, 25일에는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30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등

곽배희 소장은 4월 5일 본소를 방문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 등 관계자 등과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본소에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 황현정 변호사가 배석했다. 11일에는 전 대전가정법원장인 손항석 변호사가 내소하여 환담했다. 12일에는 일간 경제지 이투데이와 상담소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으며, 13일에는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영 이사장과 조성은 경영기획실 실장이 신임인사차 내소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김영정 연구위원이 방문하여 호주제 폐지 운동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25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4:3 PM 페이지34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지·부·소·식

강릉지부

4월 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 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임경, 이정수, 이용원, 윤용원, 윤중상, 구은미, 김인현, 류경재, 김미조, 이서준, 임요한, 장익현, 이희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3회, 광주시법원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폭력예방 순회교육을 8회 실시하였다. 한승일, 김정혜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장수혁, 한승일, 허정택,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고맙습니다

2018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수윤,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신수경, 안서연, 이경석, 이혜민, 이효재, 임주영,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심미숙, 이승주, 장철진,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학생 자원봉사

김도영, 김하영, 김현서, 남서연, 민지은, 박소언, 박정현, 박지수, 박현조, 배소희, 손지희, 이수현, 차시온, 최슬지, 최희원, 한 솔, 함솔희, 함채은, 현정우,김도영, 김소희, 김유진, 최승은, 허호재 님

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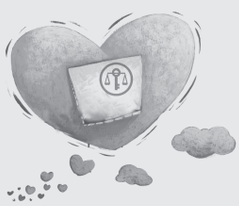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5 CMYK출력

송도지부

4월 11일 젠더폭력사건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의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7일 인천시민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4월 6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서정식, 손난주, 최강호, 강은혜, 박진호, 오도환, 박진우, 황미옥, 홍성민, 김현명, 임용호, 정원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울산지부

3월 26일 울산가정법원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4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4회,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4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17일에는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영신, 한지영, 박형윤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정아람, 최혜욱, 진현덕, 박형윤, 박정교, 서보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4월 1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5명, 가사조사관 2명이 참석하여 서울가정법원 수탁기관 간담회를 상담소에서 실시하였다. 이재경, 박진석, 장상현, 박은정, 이동건, 홍지혜, 이영주, 황은하, 김형석, 김종운, 여지은, 심미숙, 고승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4월 11일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4월 3일, 16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가사조정 사례연구 회의에 참석하였다.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박인욱, 이창희, 이재영, 남상업, 고정항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3월 28일 2018 충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춘천지부

4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가정폭력 상담사례를 발표하였다. 25일 춘천지방법원 민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임미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6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2018년 3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3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368건으로 본부가 7,060건, 지부가 6,308건이었다. 본부는 6,29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613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00건 · 소송구조 4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32건 · 화해조정 1,085건 · 소장 등 서류작성 22건 · 소송구조 69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9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0%→2.5%), 사실혼해소(0.7%→1.0%), 위자료 · 재산분할(9.9%→10.4%), 면접교섭권(2.7%→3.3%), 인지(1.2%→1.6%), 친생부인(1.2%→1.7%), 친생자존부(2.1%→2.9%), 입양(1.5%→1.6%), 혼인무효 · 취소(0.6%→0.7%), 부양(1.2%→1.8%), 유언 · 상속(7.0%→7.4%), 가족관계등록부(2.9%→3.2%), 성변경(0.9%→1.1%), 파양(0.2%→0.3%), 성년후견(1.5%→2.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2%→4.0%),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9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3건(19.1%), 전화상담 4,832건(76.7%),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2건(4.2%),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8년 4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041				
법률상담 (6,311)				
면접	전화	통신	서신	지상
1,086	4,978	243	3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626	69	35		

* 2018/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8,617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7,060	1,203	4,832	262		지상 1	6,298	613	100	49
강 릉 (033) 652-9555	73	55	17				72			1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486	54	72				126	358		2
군 산 (063) 442-1560	133	44	38				82	50		1
대 구 (053) 745-4501	523	215	52	5		출장 126	398	121		4
대 전 (042) 520-5258	201	42	157	1			200		1	
동 해 (033) 535-0188	86	18	67				85			1
목 포 (061) 273-2514	145		145				145			
부 천 (032) 667-2314	384	91	211				302	82		
성 남 (031) 707-6661	316	137	95	1		출장 26	259	55	2	
송 도 (032)-834-1369	144	35	44				79	43	5	17
수 원 (031) 243-4600	519	152	140	1		출장 70	363	154		2
순 천 (061) 753-9910	182	59	122				181			1
안 동 (054) 856-4200	135	15	84			출장 2	101	30		4
울 산 (052) 246-9568	98	35	58				93	5		
익 산 (063) 851-5113	279	50	225				275			4
인 천 (032) 865-1120	600	252	323				575	14	1	10
전 주 (063) 244-2930	264	123	96	27	12		258		1	5
정 읍 (063) 535-3705	122	37	53				90	32		
제 천 (043) 644-5690	102	31	68				99			3
중 구 (02) 2238-6554	330	228	99				327			3
진 주 (055) 746-7975	153	33	76				109	38		6
창원 · 마산 (055) 261-0280	295	122	161	1			284	9		2
청 주 (043) 257-0088	245	71	107				178	60	7	
춘 천 (033) 257-4688	222	53	33			출장 134	220			2
태 백 (033) 554-4004	38	9	20			출장 9	38			
평택 · 안성 (031) 611-4251	163	46	44			출장 34	124	34	5	
포 항 (054) 283-7555	70	9	60				69			1
지부총상담	6,308	2,016	2,667	36	12	출장 401	5,132	1,085	22	69
총 상담	13,368	3,219	7,499	298	12	출장 401 지상 1	11,430	1,698	122	118

** 2018/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0,612건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7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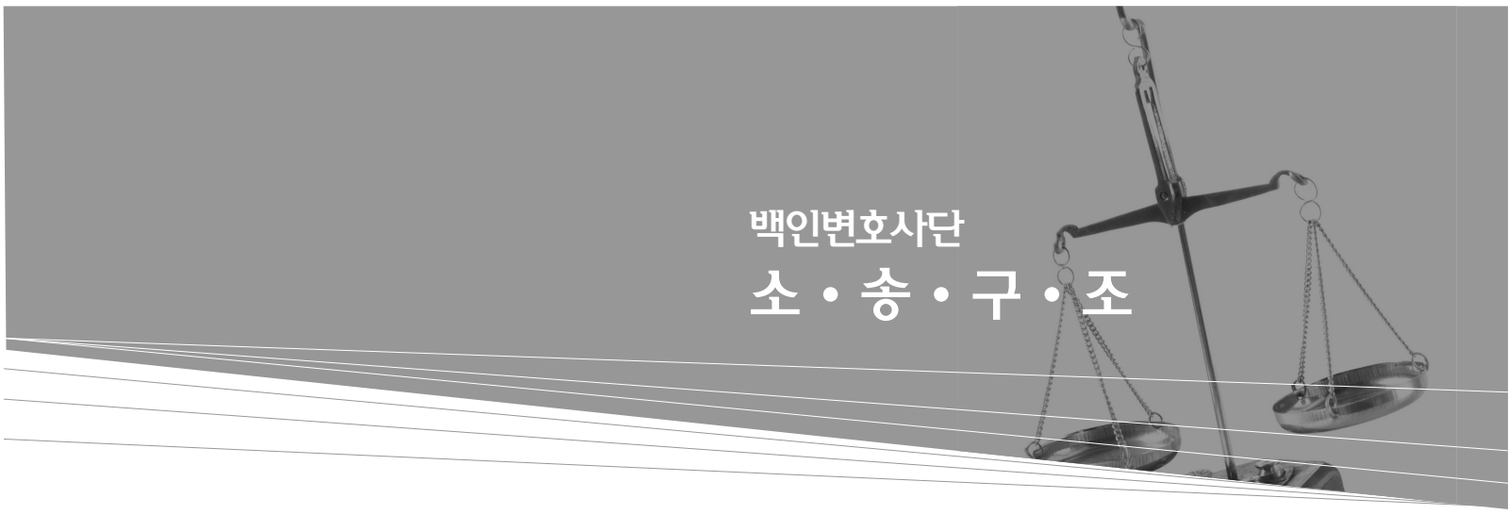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의 발달장애를 심화시킨 전 남편에 대해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7-173

담당 : 박현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3세)과 상대방(남, 35세)은 2012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었으나, 2016년 7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상대방의 요구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면접교섭과 전화통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에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사건본인은 이혼 전부터 언어장애와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이혼 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발달이 더욱 지체되었다. 언어치료 선생님은 청구인과 떨어져 지낸 1년 동안 사건본인의 불안감이 너무 컸기에 발달이 늦어지고 있으며, 추가 치료까지 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외적으로 아프지 않으니 그냥 두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청구인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길 수 없어, 2017년 2월 사건본인을 데려와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인천가정법원 2017. 8. 10.)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협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기로 한다.

3. 가. 상대방은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만일 위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연락하여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나.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시 청구인의 양육방법을 존중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양육사항을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혼인신고 후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289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0세)는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이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03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는 불법체류자였고, 혼인신고를 하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피고는 1년 후 돌

가정상담내지-5월.ps 2018.5.9 3:29 PM 페이지38 CMYK출력

아오겠다며 방글라데시로 떠나버렸다. 피고는 방글라데시로 떠난 이후 일절 연락이 없었고, 연락처까지 바꿔 연락할 길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떠난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2013년경 원고는 노동력이 회복되어 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나, 2016년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3.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비혼모에게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정

법률구조 2017-326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0세)과 상대방(남, 36세)은 동거를 하면서 혼인외 자로 사건본인(여, 2세)을 두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추후 시댁에서 돈을 마련해준다고 하였으니 청구인과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으며, 청구인과 친정어머니는 결국 이 때의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힘겹게 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건본인 출산을 전후하여 총 4번 상대방을 볼 수 있었는데, 사건본인 출생 1개월 후인 2016년 1월부터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 이에 청구인은 긴급지원비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홀로 힘겹게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게 되어 상대방을 찾아갔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청구인을 쫓아낼 뿐이었다.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도움은 물론이고 만날 수조차 없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민하던 중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6.)

1.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6,9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7년 12월부터 2034.12.10.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아내에게 과도한 빚을 떠맡기고 외도까지 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341

담당 : 김미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42세)와 피고(남,48세)는 2008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도록 하고 지방과 해외촬영을 핑계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으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원고가 혼자 생활을 책임졌다. 피고는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외도를 하였고, 원고에게는 성적인 모욕을 주거나 성병을 옮겨 원고의 심신을 망가트렸다.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카드빚을 내거나 대출, 사채 등을 빌려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급기야는 타인에게 돈을 차용한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서로 별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받아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12.16.부터 2018.2.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싣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교/육/강/좌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9시 / 7월 23일(월) 오후 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5월,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6월 28일	5.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7월 26일	6. 다름과 다양성
9월 27일	7. 외도에 대한 대처
10월 25일	8. 분노 조절 장애
11월 22일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2월 27일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5월 14일/ 5월 28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5월 10일	감 사 :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선물같은 감정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수석강사)
6월 14일	우 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2일	평 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가정상담표지-5월 2018.5.9 3:33 PM 페이지1 CMYK출력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2018년 6월 29일(금).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주제 발표 :**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 **토론 발표 :**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양혜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조성균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 연구 결과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